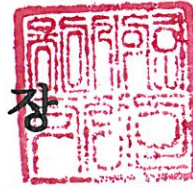


##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(추가)

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8년 12월 5일

용 인 시 의 회 의 장



### 1. 조례안 예고 현황

| 구 분 | 조 례 명                      | 발의자(제출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1건 (일부개정 1건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 |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이미진, 이은경, 하연자,<br>명지선, 윤원균, 황재욱<br>정한도 의원<br>대표 발의자 : 유진선 의원 |

### 2. 조례안 : “별첨 참조”

### 3. 의견제출

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8년 12월 12일(수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보내실 주소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)

용인시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)

전화)031-324-2597 전자우편)jura16@korea.kr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(조항) | 찬 성 여 부 |    | 의 건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|
|            | 찬성      | 반대 |     |    |
|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|